

신문협회 회원 초청 간담회

언론중재위원회는 1985년 9월 1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신문협회 회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언론중재제도의 운영현황」. 다음은 이상회 위원(연세대 교수)이 발표한 주제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주.

언론중재제도의 운영현황

이상회
연대교수 · 중재위원

오늘날의 언론은 많은 종사자와 방대한 조직을 갖춘 기관으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으로 절대적 영향력을 작용하는 하나의 권력체와 같다. 특히 자본주의체제 하에서의 언론은 이윤추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기업으로 경제적으로 잉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집단, 지정계층의 이익증진을 표방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문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므로 아무리 정확하고 정당한 보도를 하려고 노력해도 오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신문이 오보를 내었을 때 이를 정정하는 보도를 실는 일은 언론자유와 구속이나 규제와는 관계가 없다. 정부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과 같이 신문도 잘못하면 지체 없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언론의 정도요, 또 언론의 공신력과 신속성을 높이는 길이다.

오보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면 그 오보가 고의든 비고의든,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언론은 이를 정정해줄 법적 책임을 진다. 이에 오보의 정정을 법원판결을 통해 명령하는 최종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법원의 판결과 같은 까다롭고 번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도 정정보도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를 신청한 신청인의 편의에 부합되는 기관이라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정보도를 위한 소송의 사태를 막아주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언론사의 권익에 부합되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 된다.

지난 4년 반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언론사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중재위원회가 그 원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지금까지의 중재과정에서 나타난 중재위원회의 애로와 중재제도상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몇 개의 중요한 자료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① 먼저 정정보도신청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명예 및 사생활침해가 전체의 7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신용권 실추로 24%, 저작권 침해가 3%이다.

② 신청인을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전체의 59%로 가장 많고, 일반단체가 15%, 회사 13%, 종교단체 6%, 공공기관 4%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신청인의 약 71%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소시민이나 영세기업이라는 사실이다.

③ 신청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합의율이 25%에 불과한 데 비해 불성립률은 41%, 취하율은 29%나 되는데, 이는 중재가 사실상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도 된다.

올해에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언론사가 중재위원회를 통한 합의를 가급적 기피하려는 경향이다. 불출석함으로써 사건을 불성립으로 유도하려는 경향과 함께 장외(중재위원회 밖) 협상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향은 중재위원회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의 올바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④ 불성립의 사유를 보면 언론사의 불출석으로 인한 불성립이 36%이고 합의결렬이 64%이다.

⑤ 언론사의 출석률은 전체적으로 보아 70% 안팎이다. 그러나 통신을 포함한 중앙일간지의 평균출석률은 52%에 불과하다.

언론사가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까닭은 오보를 정정해 줌으로써 그 피해자를 가급적 빨리 구제해주어야겠다는 구제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론사의 출석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⑥ 취하사유는 자진취하가 12%, 압력취하가 28%, 회유취하가 60%이다. 압력에 의한 취하건, 회유에 의한 합의취하건, 언론사의 막강한 영향력이 작용된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취하하도록 압력을 작용하건, 취하하도록 회유하건, 언론중재위원회 밖 즉, 장외에서의 거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언론사가 중재신청을 취하하도록 신청인에게 작용하는 압력을 유형별로 보면 첫째, 언론인의 사업과 관련된 압력, 둘째, 사직당국을 통한 압력, 셋째, 집중취재, 폭로위협, 고발을 통한 여론환기 형태의 압력, 넷째, 보복기사게재를 통한 압력 등이다.

이미 수차에 걸쳐 명백히 밝힌 바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결코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언론 본연의 기능을 침해하는 기관이 아니다.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면책될 수 없는 절대적 의무요 책임이다. 오보를 내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언론이 오보를 내고도 은폐하려는 언론보다 훨씬 책임성 있는 언론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지고 보면 정정보도를 지체 없이 내는 신문이 좋은 신문이다. 정정보도문 게재를 부끄럽게 여길 이유가 없다. 정정보도로 끝날 수 있는 일을 PR 기사를 실어주는 편법을 통해 해결하려 들면 신문의 질만 떨어지고 만다. 우리 언론을 선진외국의 엘리트 지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중재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